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경호처 폐지 또는 개선〉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74호)
-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47호)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79호)

2025.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검토의견	6
1. 개정안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6
2.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박정현의원안)	7
3. ‘위해’ 명확화 및 영장 협조의무 등 신설(홍기원, 권향엽의원안) ..	18
※ 참고자료	24

I. 제안경위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홍기원 · 박상혁 · 박 정 · 이정문 · 조승래 · 이해식
강선우 · 박정현 · 정을호 · 한민수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5.

다. 회 부 일 : 2025. 3. 6.

※ 의안번호 : 8674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박정현 · 김남근 · 박홍배 · 문진석 · 이재정 · 김현정
이광희 · 이학영 · 조승래 · 신정훈 · 김동아 의원(11인)

나. 제 안 일 : 2025. 3. 18.

다. 회 부 일 : 2025. 3. 19.

※ 의안번호 : 9047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권향엽 · 이상식 · 박지원 · 정동영 · 김기표 · 이병진

소병훈 · 문진석 · 김남근 · 용혜인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5. 5. 7.

다. 회 부 일 : 2025. 5. 8.

※ 의안번호 : 1037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안]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업무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내란죄 등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방해하였음.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라고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할 것임.

이에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제18조의2 및 제21조제1항).

[박정현의원 대표발의안]

1. 제안이유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이관하고,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경호기구가 대통령의 친위대 성격으로 운영되어 적법한 사법절차 방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정이라는 정체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변경하여 조직 설치 등의 규정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경호구역 내 경호대상 외의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적법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에서는 경호대상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였음.

그러나 경호란 경호대상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8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다음날 1시경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제6197호)」 의결을 거쳐 약 6시간 만인 4시 27분경 해제되었음.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였고, 2024년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이를 저지함으로써 집행이 무산된 사건이 있었음.

이로 인해 각 개정안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거나, 위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법상 ‘위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호처의 영장집행 협조 또는 방해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경호처 개선을 위한 사항을 입법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3건)의 주요내용 정리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대통령경호처 폐지(1건)	- 대통령경호처 폐지 -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	박정현 의원안
대통령경호처 개선(2건)	- ‘위해’개념 명확화(영장집행 제외) - 영장집행 협조 또는 방해금지 의무 신설	홍기원, 권향엽 의원안

2.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박정현의원안)

개정안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현재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경호업무를 경찰청 소속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거나 정비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신설하되, 현행 차관급인 경호처장에 대응하는 경호본부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규정함.

아울러, 현행 경호처장이 수행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기간 연장 여부 결정’, ‘경호구역 지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운영’,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안전 대책기구 운영’ 등의 권한은 대통령경호본부의 장에게 이관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¹⁾

[표-2]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소속		대통령	경찰청
조직명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본부
부서장 직급		차관급	치안정감 ²⁾
전직대통령 경호연장 판단		경호처장	경호본부의 장
경호구역 지정권자		경호처장	경호본부의 장
대통령경호안전 대책위원회	소속	경호처	경호본부
	위원장	경호처장	경호본부의 장
다자간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기구	소속	대통령	좌동
	장	경호처장	경호본부의 장

1)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p.23 [참고 : 개정안 조문대비표] 참조

2) 다만, 대통령경호본부의 장의 직급은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9045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가. 대통령 경호기관 연혁 및 현황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는 경호처가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경호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 기구에 해당함.³⁾

대통령 경호 조직은 1949년 경무대경찰서의 국가원수 경호 및 경무대 경비 담당으로 출발하여 1961년 11월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발족되었고, 1963년 12월 제3공화국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대통령경호실법」 제정)되었음.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호처로 변경된 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실로 환원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3] 대통령경호처 주요 연혁

구 분	주요 연혁
대통령경호실 (1963. 12. 17.)	- 1949년 2월 ‘경무대경찰서’ 창설 - 1961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경호대’ 창설 - 1961년 11월 중앙정보부 경호대 발족 -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 창설(차관급 이후 장관급)
대통령실 경호처 (2008. 2. 29.)	-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실 경호처’로 변경(차관급)
대통령경호실 (2013. 3. 23.)	-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경호실’로 변경(장관급)
대통령경호처 (2017. 7. 26.)	-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경호처’로 변경(차관급)

3)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 제2장(대통령)에 위치하고 있음.

경호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경호처장”), 차장, 1실, 3본부, 보좌기관인 감사관,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1] 대통령경호처 조직도



자료: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경호처는 정무직(차관급)인 경호처장 1명을 포함한 총 81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보안사항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표-4] 대통령경호처 인원 현황

(2025. 6. 30. 기준)

구 분	총 계	정무직	특(별)정직	일반직
정 원	815명	1명	495명	319명

자료: 대통령경호처

한편, 지난 2016년 제20대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당시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4506호)이 발의되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장관급이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안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나. 주요 검토사항

개정안은 경호처가 군사정권 시절부터 유지된 권위주의적 산물이라는 의견⁴⁾과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대통령 경호업무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가 담당함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먼저,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인력 운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력 집중을 방지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호 체계라는 의견이 있음.

구체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를 경찰로 일원화할 경우 기존 경호처가 독립 기관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비효율성을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설·장비 등 자원을 통합·활용함으로써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및 국가예산 절감 기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⁵⁾ 경호임무에 필수적인 수사권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⁶⁾이 있음.

4) 한겨레, “독재의 잔재, 통제불능 경호처”, 2025. 1. 5.

5) 이춘삼, 「경찰경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2010), p.52

6) 이수오, 「경찰의 경호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p.95

또한, 경호업무를 국가안보와 결부시켜 경찰업무보다 상위의 업무로 취급할 경우 경호책임자의 직급을 지나치게 높이고, 이로 인한 권력자와의 밀접성이 강화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함으로써 경호기관의 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경호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충실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⁷⁾

나아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중 미국⁸⁾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이 연방경찰, 국가경찰 등 일반 경찰조직이 경호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⁹⁾과, 대통령 경호임무만을 위해 장·차관급을 수장으로 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을 두는 외국 사례는 없다는 의견¹⁰⁾이 있음.

[표-5] 해외 주요 국가별 경호조직 운영형태

구 분	국 가	경호기관명	소 속
대통령중심제	미국	비밀경호국(SS)	국토안보부
	러시아	연방경호국(FSO)	대통령 직속
이원집정부제	프랑스	경호실(SLDP)	국립경찰청
	포르투갈	요인경호대	경찰청
	우크라이나	국가경호국	대통령 직속
	튀르키예	대통령경호국	대통령실
의원내각제	영국	왕실요인경호단	런던광역경찰청
	독일	경호총국	연방범죄수사청
	일본	경비국	경찰청(중앙)
		경비부	경시청(자치)
	이탈리아	대통령근위대	대통령 직속
		총리경호실	국가경찰
	이스라엘	경호안전국(ISA)	총리 직속

자료: 대통령경호처

7) 신회섭·한승훈, 「대통령 경호책임자의 월권사례 분석을 통한 경호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2021), pp.383-385

8)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경찰과 분리된 조직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수장 또한 차관보급으로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됨.

(미국·영국·독일·일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p.107 [참고2: 해외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 관련 제도] 참조)

9) 이춘삼, 「경찰경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2010), p.49

10) 장기봉, 「21세기 국가경호기관 MODEL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p.108

반면, 대통령 경호기능을 현재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에서 전담하는 것이 경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¹¹⁾ 대통령에 대한 기밀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¹²⁾

구체적으로, 경찰이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할 경우 군이 경찰의 지휘·통제를 거부하거나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¹³⁾과 경호업무와 관련한 조정 통제가 곤란하다는 의견¹⁴⁾이 있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경호·경비 작전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있음.¹⁵⁾

또한, 현재 경호처는 조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행정, 전산, 방호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경호라는 특정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경호업무에 요구되는 정보·보안·검측·통신·교육훈련 등 다양한 경호관련 제반 기능의 통합 수행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¹⁶⁾

나아가,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이므로, 현재 경찰이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과는 안보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¹⁷⁾

11) 경호처는 경호는 근접경호, 폭발물 탐지/제거, 대저격 활동, 전기·소방·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조치, 무인 드론 탐지/대응, 사이버보안, 화학·생물학·방사능 탐지/제거, 국정지휘통신망 보장, 비상응급 조치, 기동 수단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전문기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12)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고도의 훈련과 더불어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면담자·발언 등 경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 경호기능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경호처에 비해 방대한 조직 규모와 이로 인한 정보 접근 인원 증가 및 폭넓은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 유출 가능성 등으로 현재보다 기밀 유지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한공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2018. 2.).

13) 이수오, 「경찰의 경호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p.95

14) 양재열, 「국가원수 경호 시스템의 변화와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p.95

15) “이는 다수 경호유관기관의 경호안전 관련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 및 총괄, 나아가 갈등예방 차원에서 대통령 경호기관인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직속의 경호전문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을 시사한다”(주일엽, 「대통령 경호기관의 변천과정 및 발전방안」, 시큐리티연구(2021), p.179)

16) 양재열, 「국가원수 경호 시스템의 변화와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p.95

다. 기타 검토사항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부칙 제3조¹⁸⁾(경과조치)를 통해 경호처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경호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는 직급 체계, 연령 및 계급 정년 등에 있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경호·경찰공무원의 체계 통합을 위한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경호처를 폐지할 경우 경호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으로의 존치 여부, 구체적 직급 재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입법례¹⁹⁾를 참고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전환된 이후의 직급 산정기준은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체계·자구 측면에서, 개정안은 벌칙규정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삭제하고 있는데, 「경비업법」 제5조²⁰⁾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17) 조성구, 「대통령경호업무 경찰 이관에 대한 비판적 소고」, 시큐리티 연구(2019), p.192

18) 개정안 부칙 제3조(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경호처 소속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경찰 공무원으로 본다.

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 2008. 2. 29. 제정)」 부칙 제5조(특별채용 등) ⑦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송위원회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한다.

20) 「경비업법」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한, 개정안은 부칙 제4조²¹⁾(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통해 다른 법령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를 ‘경찰청’으로, ‘대통령경호처의 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대통령경호본부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관련 법률의 조문에 외형상 변화가 없어 법률 해석 및 이해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²²⁾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경호처’ 및 ‘대통령경호처장’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들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법제상 바람직하다고 보임.

[표-6] ‘대통령경호처’ 및 ‘대통령경호처장’ 인용 법률 현황

구 분	주요 연혁
대통령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아목 및 제16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4호
	「국회법」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대통령경호처장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5조제3항제1호

21) 개정안 부칙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을, “대통령경호처의 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대통령경호본부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2)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관련 법률의 외형상 변화는 없다. 따라서 어떤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적용되는 것인지 명백하게 알기 어려워 법률 이해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921)

참고로, 개정안은 경호처 폐지와 함께 대통령경호본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호본부장의 직급 및 권한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904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9045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9048호)」 등의 의결이 전제될 필요가 있는데, 이들 3건의 개정안은 현재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하려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²³⁾이 계류 중이므로,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를 병합하여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7] 개정안(5건) 주요내용 비교

구분		현행	민형배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신장식 의원안	이광희 의원안
대통령 경호기능		대통령 경호처	경찰로 이관				
조직명			대통령경호국			경호국	국가경호국
부서장 직급		차관급	치안정감	치안감	치안정감	-	-
전직대통령 경호연장 판단		경호처장	경찰청장		-	-	-
경호구역 지정권자		경호처장	경찰청장				경호국장
대통령경호 안전대책 위원회	소속	경호처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장	경호처장	경찰청장		-	-	-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안전 대책기구	소속	대통령	대통령			국무총리	
	장	경호처장	경찰청장		-	-	-

2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대표발의의원 및 의안번호는 아래와 같음.

①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제7268호), ②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제7304호), ③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제7311호)
④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제7347호), ⑤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제7875호)

라. 관계기관의 의견²⁴⁾

대통령경호처는 현행 독립기관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내·외 경호업무 전반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총괄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호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경우 다양한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제한되고, 경찰력만으로 수행이 어려운 고도의 전문기능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호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세계 주요국들은 각 국가별 상이한 정치체제, 역사적 배경, 적성국의 존재여부 등에 따라 자국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경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찰 권력이 다원화·분권화되어 있고, 테러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내각제 국가에서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는 사례가 존재하나, 이는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환경 속에서 경찰 권력이 다원화·분권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²⁵⁾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경호 기능이 경찰청 하부조직으로 이관될 경우 보안·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자간 정상회의를 위한 경호·안전 대책 기구는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되 그 책임자를 경찰청장

24)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방부 및 경찰청의 의견은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어 현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제작성함.

25) 참고로,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경호업무는 전문성·독립성·연속성이 필요하므로, 유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기능은 현행과 같이 경호처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으로 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경우 개정안과 달리 경찰청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호업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특별한 의견을 개진하진 아니하였음.

한편, 국방부 및 경찰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

3. ‘위해’ 명확화 및 영장 협조 의무 등 신설(홍기원, 권향엽의원안)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현행법상 ‘경호’의 대상이 되는 요소인 ‘위해(危害)’의 범위에 법관이 발부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의 집행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영장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상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구체적 규정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음.

우선, **홍기원의원안**은 경호처장의 영장 집행 협조 의무를 신설하면서, 해당 영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형법」상 내란죄²⁶⁾(제87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외환죄²⁷⁾(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반면, **권향엽의원안**은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영장 집행 방해금지 의무를 신설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범죄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8]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홍기원의원안	권향엽의원안
‘위해’의 범위	법관이 발부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영장 집행 제외	
영장집행 시 의무	‘처장’의 ‘협조’	‘소속공무원’의 ‘방해금지’
의무발생 대상범죄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모든 범죄
의무위반시 제재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6) 「형법」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89조(미수범),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27)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제93조(여적), 제94조(모병이적), 제95조(시설제공이적),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제97조(물건제공이적), 제98조(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2조(준적국),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제104조(동맹국)

[표-9]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홍기원의원안	권향엽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u>위해(危害)</u> 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1. ----- ----- ----- ----- <u>위해(법관이 발부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의 집행은 포함되지 아니한다)</u> -----.	1. ----- ----- ----- ----- <u>위해(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포함되지 아니한다)</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설></u>	제18조의2(영장 집행 협조의무)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이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u>처장은 그 영장의 집행에 응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영장 집행 시에 처장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21조(벌칙) ① -----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 ----- ----- -----.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 경호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권 행사와 경호처의 임무 수행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협조 또는 방해금지 의무 등 법률상 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모두 현행법상 ‘위해’의 범위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제외됨을 명시하여 영장 집행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서 경호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권향엽의원안**은 모든 영장 집행이 ‘위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영장 집행 방해금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것과 달리, **홍기원의원안**은 경호처장에게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여하되, 그 적용 대상을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범위 제한은 헌법 제84조²⁸⁾에 따라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발부될 수 있는 영장은 위 범죄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상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대통령 외에도 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등 다양²⁹⁾한데, 이들에 대하여는 형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 외의 범죄혐의로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권향엽의원안**과 같이 ‘위해’의 범위와 협조 의무의 대상을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28)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둘째, 개정안은 ‘처장의 영장 집행 협조 의무’(홍기원의원안) 또는 ‘소속공무원의 영장 집행 방해금지 의무’(권향엽의원안)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 제21조제1항³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에 해당하며, 특히 위와 같은 행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특수공무방해죄(제144조)’로 규율되어 개정안보다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³¹⁾³²⁾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대상에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에도 경호대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문·검색, 신원 확인, 위험물 탐지, 질서유지 등의 경호 안전조치는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영장집행 제한규정³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2) ‘특수공무집행방해’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더 경함.

33)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문 의 처
02)6788-5016

참고 1

개정안 조문대비표 (대통령 경호기능 경찰로 이관)

현 행	박정현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경호 업무의 직무범위</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소속공무원”이란 <u>대통령경호처</u> (이하 “ <u>경호처</u> ”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u>경호처</u> 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대통령경호본부</u> (이하 “ <u>경호본부</u> ”라 한다)----- -----. 4. ----- <u>경호본부</u> ----- ----- -----.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u>대통령경호처장</u> (이하 “ <u>처장</u> ”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u>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② <u>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u> ③ <u>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u>	제3조(대통령경호본부) ① 이 법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경찰청에 경호본부를 둔다.</u> ② 그 밖에 <u>경호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조(경호대상) ① <u>경호처의 경호대상</u> 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제4조(경호대상) ① <u>경호본부</u> ----- -----.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박정현의원안
6. 그 밖에 <u>처장</u>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u>처장</u>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처장</u>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생략)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u>처장</u>이 된다. ③ ~ ⑤ (생략) <u><신설></u>	6. ----- <u>경호본부의 장</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경호본부의 장</u>----- -----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경호본부의 장</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u>경호본부의 장</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3(경호구역에서의 안전조치) ① <u>경호본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에 경호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에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u>경호본부의 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u>

현 행	박정현의원안
제6조(직원)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삭제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내용이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호구역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박정현의원안
<u>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u>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u> 1. <u>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u>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생략) ② 소속공무원은 <u>경호처</u>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u>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u> 2. <u>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u>	제9조(비밀의 엄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u>경호본부</u>----- ----- ----- -----. <삭제>

현행	박정현의원안
<u>때</u> 3. <u>직제와 정원의 개폐(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된 때</u> 4. <u>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5. <u>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u> 6. <u>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u> ② <u>제1항제2호·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③ <u>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u> ④ <u>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u>	

현행	박정현의원안
<u>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u>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u> <u>1. 연령정년</u> <u>가. 5급 이상: 58세</u> <u>나. 6급 이하: 55세</u> <u>2. 계급정년</u> <u>가. 2급: 4년</u> <u>나. 3급: 7년</u> <u>다. 4급: 12년</u> <u>라. 5급: 16년</u> <u>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u> <u>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u>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u> <u>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u>	<u><삭 제></u>

현행	박정현의원안
<u>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u> ④ <u>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u> 제12조(징계) ① <u>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u> ② <u>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 <u>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u> ④ <u>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3조(보상) <u>직원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삭 제> <삭 제>

현행	박정현의원안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u>경호처</u>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u>위원장과 부위원장</u> 각	<삭 제>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경호본부의 장</u>----- ----- ----- ----- -----.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 ----- ----- ----- <u>경호본부</u>----- ----- -----. ② ----- <u>위원장 1명</u>-----

현행	박정현의원안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u>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u> ④·⑤ (생략)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u>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한다.</u>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u>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u>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u>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u>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u>	----- -----. ③ ----- <u>경호본부의 장</u>----- ----- -----. ④·⑤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현행	박정현의원안
<u>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u> <u>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u> <u>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도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u> <u>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기나</u>	

현행	박정현의원안
<u>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u> <u>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u> <u>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u> <u>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u> <u>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u> <u>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u> <u>유가 있을 때</u>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손실보상) ① <u>처장은 소속공무</u> <u>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u> <u>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u> <u>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u> 1. <u>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u> <u>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 또는</u> <u>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u> <u>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u> <u>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u> <u>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u> <u>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u> <u>경우를 포함한다)</u> 2. <u>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u> <u>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u> <u>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u> <u>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u> ② <u>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u> <u>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u>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삭 제></u>

현행	박정현의원안
<u>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u> <u>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u> <u>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삭 제></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준비행위: 경찰청은 이 법 시행 전 경호업무 승계를 위한 행위 가능 ◦ 경과조치: 경호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호본부의 장이 승계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	

참고 2 해외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 관련 제도³⁴⁾

2. 해외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 관련 제도

1) 미국

-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경찰과 분리된 경호조직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그 수장 또한 차관보급으로 한국보다 낮음
- 미국의 현직 및 전직 대통령 경호는 비밀경호국(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USSS)³⁾에 의해 이루어짐
 - 1963년 한국에 창설된 대통령경호실(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의 모델이기도 함
 - 미국 비밀경호국은 1865년 미국 최초 연방수사기관으로 재무성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01년에 윌리엄 매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에 미 의회에서 비밀경호국이 미국 대통령의 보호를 담당하도록 법률로 정함
 - 2001년 9·11 테러 이후 신설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로 소속이 변경되었음
- 비밀경호국(SS)에 위임된 직무에 관해서는 「18 U.S. Code § 3056」에서 규정하고 있음
 - 비밀경호국은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부통령 당선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The immediate families, 배우자 포함),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이혼 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제외), 전직 대통령의 16세 미만 자녀, 미국을 방문 중인 외국 정부 수반 내외 등을 보호하고, 이러한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협요인을 수사함
 - 비밀경호국은 또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부통령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경호함
- 현재 비밀경호국은 기존 경호기능에 항공안전부, 대저격팀, 긴급대응팀, 대추적부대, 위협요인완화팀, 의료긴급대응팀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 비밀경호국의 인원은 약 3,200명의 특수요원, 1,300여명의 정복경호원, 2,000여명의 행정·전문·기술요원 등으로 구성됨⁴⁾

3) 미국 대통령 비밀경호실 홈페이지, (최종검색일: 2025년 2월 3일) <<http://www.secretservice.gov/protection>>.

4) 안승욱, “한·미 대통령경호 제도변화 비교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34)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 경호 관련 입법조사」, 입법조사회답, 2025. 2. 12.

2) 영국⁵⁾

- 영국은 경찰중심의 경호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영국의 현직 및 전직 총리는 런던 수도경찰청(London's Metropolitan Police Service)의 특수작전국(Specialist Operations) 소속으로 경호보안본부(Security & Protection) 산하 경호경비부(The Protection Command)의 보호를 받음
- 경호경비부는 현재 2개의 경호과로 운영되고 있음
 - 왕실·요인경호과(RaSP: Royalty and Specialist Protection)
 - 하원청사·외교공관경비과(PaDP: Parliamentary and Diplomatic Protection)
- 현직 및 전직 총리의 경호는 왕실·요인경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2018년에는 대테러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특수작전국 산하에 대테러부대를 하위에 편제하고 대테러정책관을 신설함
- 현직 총리의 경우,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 뿐만 아니라 특수부대(UK Special Forces)에 의해 근접경호를 받게 됨

3) 독일

- 독일의 현직 대통령 및 총리 등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업무는 연방 내무부 산하 연방 범죄수사청(BKA : BundesKriminalamt, 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 그 중에서도 경호총국(Sicherungsgruppe, SG)에서 담당하고 있음
- 연방범죄수사청은 독일 「연방헌법」 제87조에 의거, 각 주의 경찰업무를 감독하여 연방정부 중앙경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
 - 경호총국은 「연방형사경찰법」 제6조에 따라 연방 대통령, 연방 수상 등 헌법기관의 보안 및 보호를 담당함⁶⁾
- 경호총국의 임무는 경호1처(SG-E그룹)와 경호2처(SG-F그룹)으로 나뉘는데, 경호1

5) 정임수, 임준태, “최근 G7국가의 경호시스템 현황 분석”, 『시큐리티연구』 제73호, 2022, pp.267-278.

6) 독일 연방범죄수사청, “Abteilung “Sicherungsgruppe” (SG)”, (최종검색일: 2025년 2월 3일) <https://www.bka.de/DE/DasBKA/OrganisationAufbau/Fachabteilungen/Sicherungsgruppe/sicherungsgruppe_node.html>.

처는 연방대통령, 연방총리 및 기타 내각구성원과 국내 주요요인에 대한 보호 및 각종 주요시설의 경호경비 등을 제공하며, 경호2처는 전술작전센터운영, 국내 방한 요인경호, 작전 및 IT지원,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함⁷⁾

- SG-E1(연방대통령과)에서 현 연방대통령과 전임 연방대통령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하여, SG-E2(연방총리과)에서 현 연방총리와 현 내무부장관, 전임 연방총리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함

- 최근에는 특수임무수행과(SG-E5)와 특별행사과(SG-E6)가 증설됨

□ 경호업무 이외에 수사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주로 수행함

□ 연방범죄수사청 인원은 약 4,500명이나 실제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안전과 인원은 5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총리·외무장관·국방장관·내무장관·법무장관은 항상 수행경호를 실시하고, 기타요인은 위해정보 발생 시에만 한시적으로 경호함

□ 전직 대통령 및 총리의 경우, 기타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됨. 또한 중요한 업무에 관해서는 연방헌법보호청(BFV, 정보기관에 해당)의 보호를 받기도 함⁸⁾

4) 일본⁹⁾

□ 일본의 경호시스템은 3원화 구조로, 중앙경호조직인 경찰청, 도쿄의 경시청(도쿄도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 조직, 한국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영국의 런던수도경찰청에 해당함), 지방경호조직인 각 도부현(道府県)의 경찰본부가 협력하여 이루어짐

□ 일본의 현직 총리의 경호는 일본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요인 경호 임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SP(Security Police)라고 지칭함

- 경호1계 : 현직 내각총리대신(수상) 담당
- 경호2계 : 국무대신 담당
- 경호3계 : 외국요인 등 국빈·기동경호(機動警護) 담당
- 경호4계 : 도쿄도지사·정당요인 담당
- 총리대신관저경비대의 경우, 총리대신관저의 시설경비를 수행하는 부대로 근접경호는

7) 독일 연방범죄수사청, "Organigramm als barrierefreier Text", (최종검색일: 2025년 2월 3일) <http://www.bka.de/SharedDocs/Downloads/DE/DasBKA/Organisation_Aufbau/organigramm_barrierefrei.pdf?__blob=publicationFile&v=3>.

8) 정임수, 임준태, 앞의 글, p.272.

9) 정임수, 임준태, 앞의 글, p.276.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SP가 아님

- 한편, 전직 총리의 경우, 정당요인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 SP가 경호를 담당하게 됨
- 지방경호조직인 각 도부현의 경찰본부에서는 경비부가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계획과 실행업무를 수행함
 - 경비부는 공안과, 외사과, 경비과, 기동대로 구성되며, 이들 중 경비과가 경호계획과 수행경호업무를 수행하며, 공안과와 외사과가 국내외 정보·첩보분석업무를 지원하며, 기동대가 예비대 역할을 함
- 일본에서는 경찰법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호요칙(警護要則)」¹⁰⁾에 경호에 관한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호의 적절하고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경호요칙」에 따르면, “경호대상자”란 내각총리대신, 국민 기타 그 신변에 위해가 미치는 것이 국가공안에 관한 것이 될 우려가 있는 자로 경찰청장(이하 “장관”이라 함)이 정하는 자를 말함(제2조)
 - 경찰본부장 등은 경호의 실시에 있어서 미리 경호와 관련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경호를 실시해야 함(제10조)
 - 또한, 경찰본부장 등은 경호를 실시한 때에는 당해 경호 상황 및 해당 경호에 관련된 참고 사항을 장관(경찰청장) 등에 보고하도록 함(제18조)
- 일본 경호조직의 인원현황을 보면 근접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의 경우 300여명이며, 천황 및 그 일가의 근접경호와 항공경비를 맡는 항공경찰본부가 900여명임
 - 지방경호조직인 도부현 경찰본부의 근접경호인력, 경호계획을 담당하는 경찰청 경비국 경비운용부, 경시청의 정보·보안·대테러 등 경호지원부서, 총리관저경비대까지 포함한다면 인원은 크게 늘어날 수 있음

10) 경호요칙(警護要則), (최종검색일: 2025년 2월 4일) <https://laws.e-gov.go.jp/law/504M60400000015#Mp-Ch_6>.